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TT 출현, VOD 보편화 등 매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방송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1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4항)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다.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안 제57조제5항)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 1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유예(안 부칙 신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

마.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5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5항)

-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매월”을 “매반기”로,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매월”을 각각 “매반기”로, 같은 목 중 “80”을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월”을 “매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매분기”를 각각 “매반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매반기”를 각각 “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특정 1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매 반기”를 “연간”으로, “80”을 “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중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이동멀티미

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u>매월</u>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u>50</u> 이하로 편성할 것	1. ----- ----- ----- ----- <u>매반기</u> ----- ----- <u>60</u> ----- ----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u>매월</u>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2. ----- ----- ----- <u>매반기</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	④----- ----- -----

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
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
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
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
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
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
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
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생 략)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
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
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
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

1. -----

가. -----
---- 매반기 -----

나. -----

--- 매반기 -----

다. -----
----- 매반기 -----
----- 70 ----

2. -----
---- 매반기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
시하는 비율로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
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
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

1. -----

----- 매반기

2. -----

----- 매반기

3. -----

----- 매반기

--

4. -----

-----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⑧ (생략)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 ~ ④ (생략)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

1. -----

-- 연간 -----

--

2. -----
----- 연간 -----

3. -----

----- 연간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방송사업자(특정 1개 국가의

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u>매 반기</u>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u>80</u>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u>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u>)----- ----- ----- <u>연간</u> ----- ----- ----- <u>90</u>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285